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1. 11.(화)	담당부서	지역경제총괄과
담당과장	서기웅 과장(044-203-4410)	담 당 자	전성철 사무관(044-203-4419)

초광역 협력의 성공·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'22.1.11.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」국회 본회의 통과 -
- 초광역권 개념 신설,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·지원 근거 마련 등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**오늘('22.1.11.)**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*」(수정안)이 **국회 본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* 법안 발의('20.11.20. 송재호 의원) → 산중위 상정('21.2.23) → 법안소위 심사('21.9.8., 11.23.) →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('21.12.1.) → 법사위 의결('22.1.10.) → 본회의 통과('22.1.11.)

○ 이번 균특법 개정은 **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**을 돕기 위해,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「**초광역협력 지원전략('21.10.14.)**」의 **후속 조치**로,

○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·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'**초광역권' 개념을 신설**하고,「**초광역권 발전계획**」**을 수립**할 수 있도록 하며, **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**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□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,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 **'초광역권'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**하였다.

○ "초광역권"을 '지역의 경제·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·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, 시·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'으로 규정함으로써

○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·행정수요에 대하여, 지역 간 자율적으로 연계·협력하여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둘째, **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**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**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*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예시: 부산·울산·경남, 대구·경북, 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, 광주·전남 초광역권발전계획 등

○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·발전목표·현황·여건분석,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,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,

○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였다.

○ 또한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이행·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다.

□ 셋째, **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**하였다.
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·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

○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□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,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**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**될 예정이며,

○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, **금년 상반기 중**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**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**이다.

【붙 임】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개정안(수정안) 주요 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성철 사무관(☎ 044-203-44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개정안(수정안) 주요 내용**

1 초광역권 등 정의규정 신설 (제2조 3호)

○ **(초광역권)**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·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, 시·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

○ **(초광역권 산업)**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·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 범위의 협력 산업

2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(제5조, 제6조의2, 제8조, 제9조)

○ **(절차)**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 단위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 계획 수립 시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 절차 마련

○ **(내용)** 초광역권의 범위·발전목표·현황·여건분석, 초광역 협력사업 및 초광역권 산업 관련 사항,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

3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(제10조의2, 제11조)

○ **(초광역협력사업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 권역을 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재정적·행정적 지원 가능

○ **(초광역권산업 선정)** 초광역권 수립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요건*을 충족하는 산업을 초광역권산업 선정 가능

*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,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,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
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 (제22조)

○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